
무급휴업 · 휴직 지원금 제도 안내

차 례

- <1> 무급휴업·휴직 지원제도 찾기 1
- <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비교 2
- <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FAQ 6
- <4>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13
- <5>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35

1. 무급휴업·휴직 지원제도 찾기

다음과 같이 경영사정이 어려워 무급휴업·휴직을 해야 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있다.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매출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기타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NO → 유급휴업·휴직 검토하세요

YES ↓

다음과 같이 전체 피보험자의 일부를 휴업할 수 있다.(5인 미만 제외)

구분	최소 실시 인원
19명 이하	50% 이상
20~99명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으로 전체 피보험자의 일부를 휴직할 수 있다.(10인 미만 제외)

구분	최소 실시 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YES ↓

지원대상 업종 등

업종 무관 사업주	업종 무관 사업주	모든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사업주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①관광·공연업등 ②항공기취급업등
-----------	-----------	--------------------------	------------------------------------

YES ↓

무급 휴업·휴직 지원에 필요한 사전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	최근 1년 이내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	최근 1년 이내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	---	---	--

YES ↓

휴업·휴직 최소 실시기간

무급휴업을 30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	------------------------	------------------------	------------------------

YES ↓

지원유형

무급휴업	무급휴직	무급휴직	무급휴직 지원 특례
------	------	------	------------

유형별 지원내용

신청서 제출기한	30일전	30일전	30일전	7일전
지원기간	180일	180일	180일	90일
지원금액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 (1일 6.6만원 한도)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 (1일 6.6만원 한도)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 (1일 6.6만원 한도)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
지원대상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비교(상세내용)

단계	구분	①일반업종 무급휴업·무급휴직	②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무급휴직	③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무급휴직 특례																						
① 무급휴업	사전요건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무급휴업 사유	좌동	해당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달 감소 기준</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재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년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 이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 2분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 계속 20% 이상 ↑</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생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년도월평균</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 30% 이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년도같은달</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매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년도월평균</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 30% 이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년도같은달</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전 3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 계속 20% 이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td> </tr> </table>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매출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계속 20% 이상 ↓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매출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계속 20% 이상 ↓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 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 휴업수당 지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좌동	해당없음																							
근로자대표 협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좌동	해당없음																							
실시요건	최소 실시 인원	좌동	해당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소 실시 인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9명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명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999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명 이상</td> </tr> </table> * 5인미만 사업장 제외			구분	최소 실시 인원	19명 이하	50% 이상	20~99명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구분	최소 실시 인원																									
19명 이하	50% 이상																									
20~99명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기간	좌동	해당없음																							

단계		구분	①일반업종 무급휴업·무급휴직	②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무급휴직	③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무급휴직 특례																									
② 무급휴직	사전요건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무급휴직 사유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기준</td> <td>기준달 감소 기준</td> </tr> <tr> <td rowspan="2">재고</td> <td>직전년도</td> <td>50% 이상 ↑</td> </tr> <tr> <td>직전 2분기</td> <td>월평균 계속 20% 이상 ↑</td> </tr> <tr> <td rowspan="2">생산</td> <td>직전년도월평균</td> <td rowspan="2">월평균 30% 이상 ↓</td> </tr> <tr> <td>직전년도같은달</td> </tr> <tr> <td rowspan="3">매출</td> <td>직전 3개월</td> <td rowspan="3">월평균 30% 이상 ↓</td> </tr> <tr> <td>직전년도월평균</td> </tr> <tr> <td>직전년도같은달</td> </tr> <tr> <td></td> <td>직전 3개월</td> <td rowspan="2">월평균 계속 20% 이상 ↓</td> </tr> <tr> <td></td> <td>직전 2분기</td> </tr> <tr> <td>기타</td> <td colspan="2">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td> </tr> </table>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매출	직전 3개월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직전 2분기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좌동	좌동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같은달																														
매출	직전 3개월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월평균																													
	직전년도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직전 2분기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 실시	<p>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p> <p>*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p>	<p>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p> <p>* 고용유지조치 대상 휴업</p>	<p>무급휴직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p>																											
근로자 대표 합의	<p>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직 합의</p> <p>*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p>	좌동	좌동																											
최소 실시 인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최소 실시 인원</td> </tr> <tr> <td>99명 이하</td> <td>10명 이상</td> </tr> <tr> <td>100~999명</td> <td>10% 이상</td> </tr> <tr> <td>1,000명 이상</td> <td>100명 이상</td> </tr> </table> <p>* 10인미만 사업장 제외</p>	구분	최소 실시 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좌동	좌동																			
구분	최소 실시 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기간	90일 이상 실시	30일 이상 실시	30일 이상 실시																											

단계	구분	①일반업종 무급휴업·무급휴직	②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무급휴직	③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무급휴직 특례	
③ 공 통 사 항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30일 전 * 사전요건 확인자료 함께 제출 (예외)노사합의 시기 고려 등 직업안정 기관의장 인정하는 경우	좌동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7일 전 (예외)노사합의 시기 고려 등 직 업안정기관의장 인정하는 경우
		제출내용	① 고용유지조치계획* *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휴 업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기준, 실시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업무복귀 기 준 및 복귀 예정일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 력개발·향상계획* <필수> * 내용, 기간, 대상자, 비용 등	좌동	좌동
	지원금 신청·지급	신청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 음달 5일까지 신청	좌동	좌동
		공제	(사업주)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결 정된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신청	좌동	좌동
		지급	(센터)피보험자 지정 금융기관 직접 입금	좌동	좌동
	기타	지원일수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일 한도	좌동	①의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 일에서 특례지원은 최대 90일 한도
		반려사유	① 시행령 요건 미달 ② 3년이상 같은달 고용유지실시 ③ 고용보험료 체납 ④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임금 체불 ⑤ 보완 요구 사항 기한내 미제출	좌동	좌동

단계	구분	①일반업종 무급휴업·무급휴직	②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무급휴직	③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제외) 무급휴직 특례								
	지원금 상한액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일 상한액: 6.6만원	좌동	'20.9.15.까지 한시 적용 1인당 150만원 한도(월 최대 50만원)								
	감원방지	고용유지조치기간+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이직금지	좌동	좌동								
	지급제외자	①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③경영상 이유에 따라 권고퇴직이 예정된 자	좌동	①~③ 좌동 ④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⑤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고 있는 경우 ⑥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								
	지급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제한</th> </tr> </thead> <tbody> <tr> <td>계획 초과 이행</td> <td>계획에 따라 지급</td> </tr> <tr> <td>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td> <td>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td> </tr> <tr> <td>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td> <td>전부 부지급</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제한	계획 초과 이행	계획에 따라 지급	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	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	전부 부지급	좌동	좌동
구분	지급제한											
계획 초과 이행	계획에 따라 지급											
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											
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	전부 부지급											

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FAQ

1.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3.4월~)

2.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지원요건 확인	2.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	3. 신청 승인 후 통보	4. 무급 휴업·휴직 실시 (휴업 30일이상, 휴직 90일이상)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 법령상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 사업주가 신청 -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 담당 고용센터	√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 휴업·휴직	√ 사업주가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①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업·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기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생산대장
매출액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2-2.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13.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6.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 (유사 질의) ▲ 무급휴직 대상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

7.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 기준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프로그램: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

특별고용 지원업종	일반절차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	무급휴직 실시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즉시 무급휴직 실시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월 50만원

*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지원 불가)

8.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진 '20.4.27.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9.15.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16.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30일 이상 무급휴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9.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 4.27.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20.4.27. 이전('20.3.1.~4.27.)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무급휴업·휴직 계획 승인시 결정

-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3개월) 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과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설정

11.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2.29. 이전(2020.2.29.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3호(2020년 4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 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지원금 신청

제3조(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①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
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가.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나. 무급휴업·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 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 라. 무급휴업·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 가. 직업능력 개발·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 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 다.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 ③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청 및 반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
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지원금 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
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청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당해 청 및 소속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고용·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⑤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풀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계획서 승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지)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금 지급액 및 지원기간

제10조(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1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

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지원금 지급

제12조(지원금 지급) ①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변경)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시 계획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고용유지계획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고용유지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한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제15조(고용유지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사업주가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

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2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제16조(지도점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피보협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문서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제18조(적용원칙)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4. 가. 1)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②의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9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7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

출할 수 있다.

제20조(계획서 승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장의 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금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계획서가 승인 또는 불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지원기간) 제20조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제11조제3항의 지원기간인 180일 범위 내에서 최대 90일로 한다.

제22조(지원금 지급제외) 이 장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4조의제2항의 지급제외 대상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3.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의 적용례) 제6장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9조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의 유효기간) 제6장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제6장의 지원 특례에 따라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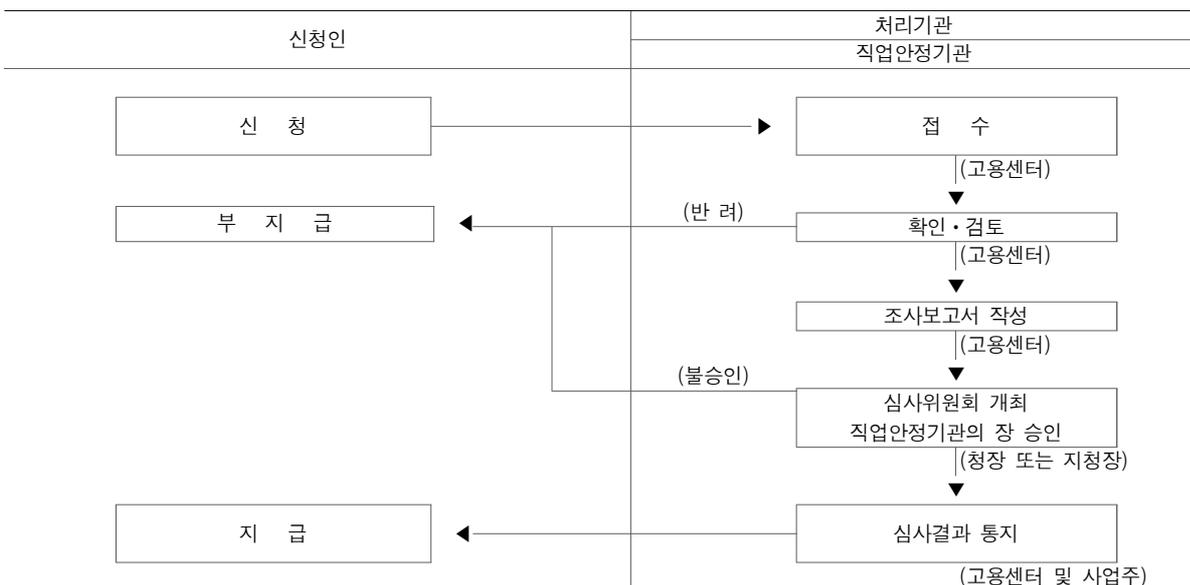
공지사항

1.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는 「고용보험법」 및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계획서가 반려처리 됩니다.
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가 「고용보험법」 및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도 심사위원회(무급휴직 지원 특례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에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성,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므로 심사위원회 결정(무급휴직 지원 특례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지원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 내용이 무급휴업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휴업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률을 적습니다.
2. ②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승인여부를 해당 항목(있음, 없음)에 적습니다.
3. ③란은 무급휴업을 실시하기 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④란은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수당 지급여부(지급하지 않음 또는 일부지급)를 적습니다.
5. ⑤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적어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실시 내용을 적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실시 내용을 적습니다.(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6. ⑥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합의여부를 적습니다.
7. ⑦란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적습니다. 무급휴업은 30일 이상,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이 3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8. ⑧란은 사업장 전체를 고용유지조치 하는 경우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무만을 고용유지조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9. ⑨란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고 근로자별 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
10. ⑩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계획 실시여부를 기재하고, 실시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계획을 수립합니다.
11. ⑪란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합니다.
12. ⑫란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제18조 부터 제22조까지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에 따른 지원신청의 경우 해당항목(예, 아니오)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계획

I. 사업체 현황

1. 사업체 연혁 및 조직현황

* 설립연도, 조직체계, 근로자현황

2. 사업현황 :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등

3. 인사노무제도 :

*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II.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1. 재무상태

* 연간(분기별)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자산현황 등

2.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조치 필요성

III. 고용유지계획

1. 고용유지조치 내용

2. 고용유지조치 기간

3. 고용유지조치 대상 부서 · 대상자 및 선정기준

4.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업무복귀 예정일 및 복귀 기준

IV.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1. 직무관련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 직업능력개발 분야, 참여대상, 기간 및 소요비용

2. 직무의 사회봉사활동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내 근로자 활동지원 계획 등

V.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별지기재 가능)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서	평균임금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직업능력개발 계획
1					~	
2						
3						
4						
5						
6						
7						
계	명			원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신청자가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p>• 노사합의 또는 협의 내용</p>	<p><input type="checkbox"/> 합의(협의) 일시</p> <p><input type="checkbox"/> 내용:</p> <p>* 단협, 노사합의서, 회의록 및 근로자대표 진화확인 등을 통해 확인</p>
<p>• 휴업·휴직기간 중 수당지급</p>	<p><input type="checkbox"/> 무급</p> <p><input type="checkbox"/> 일부지급(휴업) _____ %</p>
<p>• 3년이상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p>	<p><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p> <p>* 고용보험진산망 등을 통해 확인</p>
<p>• 고용보험료 체납</p>	<p><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체납내역 _____)</p> <p>*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p>
<p>•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p>	<p><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체불내역 _____)</p> <p>* 노사누리 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p>
<p>•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미수립 _____ <input type="checkbox"/>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 등 프로그램 내용</p> <p><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기간</p> <p><input type="checkbox"/> 참여대상자 수</p> <p><input type="checkbox"/> 소요비용 총 _____ 원(1명당: _____ 원)</p>
<p>노사관계</p>	<p>* 최근 3년간 노동쟁의, 쟁의행위 및 기타 노사분규 등 내역(노동위원회, 근로개선지도과 등을 통해 확인)</p>
<p>기타 조사내용</p>	<p>* 최근 3년 이내 고용창출우수기업 등 정부로부터 우수기업 인증 사실 등 가감점 현황 등</p> <p>* 기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의 면담 또는 계획서 내용 중 미비사항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으로 서 심사위원회 위원 참고사항 기재</p>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 보고서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조사자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불승인 **통지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근로자수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휴업·휴직 기간: 휴업·휴직 대상자 수: 휴업·휴직 대상 부서·직무: 	
반려 (불승인) 사유	<input type="checkbox"/> 재고량, 매출액, 생산량 등이 고용유지조치 불가피한 사유 해당 안됨 <input type="checkbox"/> 30일 이상 휴업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90일 이상 휴직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30일 이상 휴직 미실시(무급휴직 지원 특례의 경우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 규모율 미충족 <input type="checkbox"/>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적용제외 미승인(휴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무급휴직 실시 전 3개월이상 고용유지조치 미실시(휴직 해당) <input type="checkbox"/> 무급휴직 실시 전 1개월이상 고용유지조치 미실시(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른 휴직 해당) <input type="checkbox"/> 노사합의 미실시(휴직 해당)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기간 중 평균임금 50%이상 수당지급 또는 유급휴직 실시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료 체납 있음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임금체불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input type="checkbox"/> 보완요구 기한까지 계획서 보완 안됨 <small>* 2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목에 기재</small>	
불승인 사유	<input type="checkbox"/> 무급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 직무복귀 가능성이 낮음 <input type="checkbox"/>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미흡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미흡 <input type="checkbox"/> 지원금 예산의 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small>* 2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목에 기재</small>	
구체적인 내용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반려(불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승인 통지서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피보험자수		
고용유지조치 유형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수		
승인내용	피보험자 지원내용	• 고용유지기간		일	
		• 고용유지대상 부서			
		•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 수		명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률(지급액)	평균임금의		% 원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지원기간			일
		• 지원대상 피보험자수			명
		•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액		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전까지 그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조업을 하였거나,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여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시 이를 기재하고 신청금액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있는 후 다음달 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2020년 3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무급휴직 지원 특례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 제21조의4제2항 및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피보험자수	
고용유지조치 유형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불가피성 (40)	경기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 필요성	10	
	재고량 증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 정도	15	
	고용유지기간 중 사업주의 임금 또는 수당지불능력	15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적절성 (45)	노사합의·협의 절차 및 내용	5	
	고용유지조치기간	5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대상부서 선정	5	
	고용유지대상자 근무복귀 계획	15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정도	15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적절성 (15)	직업능력개발·향상 프로그램의 내용	5	
	참여 대상자, 운영 기간 및 소요비용	5	
	기타 사회공헌활동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 등 지원내용	5	
가·감점(±10)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창출우수기업 등 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인증 사실 등		
총 점			
심 사 평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	------	------------

(년 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앞 쪽)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피보험자수	
고용유지 조치 유형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수	
승인내용	피보험자 지원내용	• 고용유지기간		일
		• 고용유지대상 부서		
		•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 수		명
		• 지원금 지급률(지급액)	평균임금의	%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지원기간		일
		• 지원대상 피보험자수		명
•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액			원	
지원금 신청내용	피보험자 지원금	• 지원일수		일
		• 총 지원 대상자수		명
		• 총 지원금 신청액		원
	사업주 지원금	• 총 지원 대상자수		명
		• 총 지원금 신청액		원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및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
(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부
(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금동의서 제출 각 1부

(뒤 쪽)

5.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 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56, 4922, 4978, 4977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 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33, 4737, 4787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 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 송파구·강동구	02-2142-8420,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 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 · 서대문구·은평구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609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 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 구· 강서구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 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 · 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171-1833, 1800~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 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27, 대릉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 · 금천구·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88~9, 9393~4, 9396~7
중부청	중부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 구· 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811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 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032-540-5751 032-540-5742~5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 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시청	부천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청	부천시청	김포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031-920-3962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복 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 시· 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 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 성시	031-231-7897
	성남지청	성남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 평군·이천시·여주시·하 남시	031-739-3170, 3122,4991,4916
	안양지청	안양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과천시·광 명시· 의왕시·군포시	031-463-0761~4, 0767,0768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031-412-6967
	평택지청	평택고용복지 +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2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 성시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 천군· 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 평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 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 +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033-769-0943, 0946, 0960
	태백지청	태백고용복지 +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고용복지 +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고용복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	033-371-6254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센터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창군	
부산청	부산청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	051-860-1923~7, 1931,2072,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10~5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051-330-9951~9955
	창원지청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7
	양산지청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055-650-1811, 1814, 1818
대구청	대구청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중구·수성구·동구)·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	053-667-603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서구	053-605-6460~7,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구미지청	구미고용복지 +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기 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 업단지)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고용복지 +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고용복지 +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 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51
	안동지청	안동고용복지 +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광 주 청	광주청	광주고용복지 +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 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 순군· 곡성군·구례군·담양군· 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고용 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 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1
	전주지청	전주고용복지 +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 장수군·진안군·완주군· 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 +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고용복지 +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고용복지 +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07
	익산지청	김제고용복지 +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고용복지 +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6
	군산지청	부안고용복지 +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 +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 고흥군	061-720-9161
	여수지청	여수고용복지 +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40
	여수지청	광양고용복지 +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2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목포지청	목포고용복지 +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신안군·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고용복지 +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 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대전청	대전청	대전고용복지 +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 군	042-480-6012~13, 6015~21
	대전청	공주고용복지 +센터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고용복지 +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대전청	세종고용복지 +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 +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센터 1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 산군·보은군·증평군·옥 천군·영동군	043- 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천안지청	천안고용복지 +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 아산시·예산군	041-620-7441~6
	충주지청	충주고용복지 +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충주지청	제천고용복지 +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복지 +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부여군·홍성군·청양군	041-930-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고용복지 +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 +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462, 4470